

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2. 5.8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.
- 다. 상정일자 : 2002. 5.15 제9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「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3차변경안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제안하는 것임.

3. 주 요 글 자

- 이목정 궁도장 부지 추가매입(2필지 2,181m²)
- 매수신청 잡종재산 매각(1필지 528m²)

4. 검 토 결 과

- 「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3차변경안」은 용평면 이목정 궁도장 부지 추가매입 2필지 2,181m² 및점유자가 매수신청한 대화리 1000-6번지 대 602m²중 528m² 수의매각임

1) 이목정 궁도장 부지매입

-이목정 궁도장은 2001년 완공되었으며 현재 많은 동호인이 사용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임.

-편입부지중 일부 부지는 사용승락을 받아 그간 사용하여 왔으나

앞으로는 이를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
- 용전리 328번지외 1필지 2,181㎡임

2) 매수신청 잡종재산 매각

-본 토지는 지난 97년 매각코자 하였으나 그당시 매수 희망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해약되었던 토지임.

-토지의 입지조건을 보면 사면이 대부자 소유의 건물에 둘러싸인 정중앙 토지로서 다른사람이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고 현재는 건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.

-그간 20년간 대부계약자로 있는 "박준정"이 사용하고 있으며 철거된 건물부지에 새로이 건물을 짓고자 매수신청한 것으로 청구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